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6. 28. 민형배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7. 1.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12.10.)

상정 · 소위원회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민형배의원)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 접근 및 검색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의어 검색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항 일부 반영으로 형사사건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과 같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개정안은 판결서를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임의어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등,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여 재판공개라는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비실명조치를 마친 후 판결서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법원행정처는 실무적으로 비실명조치를 거쳐 판결서가 최종 공개되기까지 판결 확정 후 평균 33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입장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법원 통합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한 형사판결서 열람·검색이 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